

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2 ~ 5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2. 12. 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주민자치지원단의 존속기한 연장
 -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 1년6개월 연장함

개정근거

-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·정원 연장 승인
(경상남도 행정13101-12463(2002.12.04)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627호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항중 “2002년 12월 31일”을 “2004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(부칙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한시기구) 제4조 제2항 제12호는 <u>2002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	<p>(부칙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한시기구) <u>2004년 6월 30일</u>.....</p>